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29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9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7. 23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7. 7. 23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9. 5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삭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 증명 및 인·허가 등 처분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일부 누락과 불합리한 부분 요율표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효력이 상실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(현행 제2조의2, 제5조제2항)
- 나. 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면 재정비 개정코자함 (안 별표 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을림픽 등 한시적으로 적용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각종 증명 및 인·허가 처분변경에 따른 누락된 부문과 불합리한 부문은 탄력적으로 재정비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
- 신설과 증액부문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용요율 및 산정기준에 따른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으며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수수로 신설 및 인상에 대한 적용 부분 산출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바람
- 답 : 개별 법령근거 및 인근 시군비교 비례평균치 적용하여 산출하였음.

- 문 : 수수로 신설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어떻게 징수하였는지
- 답 : 종전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입중지 소화방법으로 징수하였음.
'96. 8. 20 개별법에서 시장, 군수에게 위임되므로서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9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